

제360회 정례회
2017. 11. 23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01일

3. 제안이유

- 일반인 및 외부기관의 대학 시설물 사용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대학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항 신설 : 제18조의2
-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조항 신설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, 공공시설인 충북도립대학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음.

※ 지방자치법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또한, 일반인 및 외부기관의 대학 시설물 사용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례에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조례안에 명시된 시설물 사용료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,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인근 충남도립대 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, 강의실 및 전산실의 경우 다소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, 운동장 등 스포츠 시설은 오히려 충남에 비해 35% 수준인 바,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※ 충남도립대 시설사용료

구분 시설별	사용기준	사용료 (원)	비 고
소강당	1일당	100,000	
	4시간미만	50,000	
운동장	1일당	200,000	
	4시간미만	50,000	
강의실	1일당	20,000	세미나실 포함
전산.어학 실습실	1일당	20,000	

- 또한,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전 납부토록 규정한 것은 사용 신청을 해놓고 이를 당일 취소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, 현재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등에서도 사용료 사전 납부를 규정해 놓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해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대학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적정 수준에서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○ 다만,

- 첫째, 안 제18조의2 제3항 제2호의 충북도민 모두에게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사용신청으로 인한 시설물 유지비용 및 관리 부담의 가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, 시설물 사용신청에 대한 해지 시 이를 삭제하거나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, 면제 대상을 충북도민으로 확대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- 이와 관련해, 지금까지 도립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옥천군 거주 군민에 한해서 대학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면제 대상을 옥천군민으로 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.
- 둘째,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, 사용 신청, 사용료 반납, 사용자 의무사항, 파손 처리 등 시설물 운용,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요구되는 바,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.

○ 본 조례안은 시기적 필요성이 인정되며,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